

『법학논총』

논문 투고 규정

제정: 2006. 3. 18
개정: 2007. 10. 5
개정: 2008. 11. 5
개정: 2012. 12. 20
개정: 2015. 10.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법학논총』에 게재 할 논문의 작성요령 및 게재신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학논총』에 게재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1. 연구소 학술행사에서 논문을 발표한 자 및 법학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자
2.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의 교원 및 법학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3. 초빙연구원이거나 이었던 자
4. 법률분야의 실무종사자
5. 대학원생으로서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6.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5.10.1.>

② 동일 작성자의 논문을 『법학논총』에 2회 연속하여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또는 법학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논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1.>

③ 『법학논총』에 게재할 논문은 법학 전문 학술지에 게재될 수준의 법학 관련 연구논문 또는 판례평석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1.>

제3조 (논문의 제출) 『법학논총』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를 희망하는 호에 따라 발행예정일의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1.>

제4조 (논문의 형식) ① 논문은 연구논문, 판례논문, 학술발표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제출한다.

②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필자 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과 직위,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이동전화),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A4용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300 매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논문의 본문 및 각주의 형식은 별도로 정한 논문발행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 (논문접수) ① 게재신청 원고의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편집 간사가 담당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법학연구소장 명의로 논문게재예정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원고가 『법학논총 원고 작성 요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편집간사는 그 원고의 접수를 취소하거나 원고의 작성자에게 수정하여 재투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6조 (논문게재안내) 『법학논총』의 마지막 장에는 다음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형식에 대한 안내문을 실는다.

제7조(저작권) 채택된 원고의 저작권은 채택과 동시에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심사료, 게재료) 『법학논총』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가 원고를 제출할 때 연구소는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출된 원고의 게재가 확정된 때에는 연구소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부칙[2006.3.18]

이 규정은 200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5]

이 규정은 200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1]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학논총』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는 논문, 판례 평석, 서평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20매)를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용지의 환경설정
 - 한글 프로그램 기본문서 A4
 - 위쪽: 23, 아래쪽: 23, 왼쪽: 28, 오른쪽: 28, 머리말: 11, 꼬리말: 11
4. 글자모양
 - 서체: 신명조, 자간: -5, 장평: 100, 크기: 10
5.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1.8ch, 줄간격: 160, 문단 위: 0, 문단아래: 0, 낱말간격: 0, 정렬방식: 혼합
6. 목차의 순서
 - I ('큰제목'으로 설정)
 - 1. ('중간제목'으로 설정)
 - 1) ('작은제목'으로 설정)
 - (1) ('아주작은제목'으로 설정)
 - i) ('바탕글'로 설정)
7. 각주의 표기
 - 1)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내어쓰기 15.9pt, 줄간격 13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9
 - 2) 처음 인용할 경우는 각주는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1) 저서인용: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 ① 한글 및 일본어, 중국어 저서일 경우, 책명을 『 』으로 표시한다.
 - ② 영어 및 독일어 등 서양문헌인 경우, 책명을 이탤릭으로 표시한다.예).홍길동, 『법학개론』, 외대사, 2000, 100면.
.Gildong Hong, *Constitutional Law*, Law press, 2000, p. 2000.
재인용시: 상계서 / 전계서, 위의 책 / 앞의 책, Ibid./ op. cit
 - (2) 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제*호, 출판연도, 면수.
 - ① 논문제목은 “ ” 로 표시한다.예).홍길동, “죄형법정주의”, 『형법연구』, 제2권 제2호(2000.8), 200면.
Gildong Hong, “A Study od Civil Law”, Hufs Law Reviews, vol. 22, no, 2(2000.8), p. 200.
재인용시: 상계논문/전계논문, 위의 논문/앞의 논문, Ibid./op/ cit.,

- (3) 외국문헌: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 (4) 판결인용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 판결 - 대법원 ****. **. ** 선고 **도 판결
- 결정 - 대법원 ****. **. ** 선고 **누** 결정
- 현재 ****. **. ** 선고 **현마** 결정
- 외국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한다.

8. 저자의 표기

- 논문의 제목 아래에 저자를 표기하고 오른쪽에 *표를 하여 각주란에 인적사항을 표기한다.
- 공동연구논문의 경우에는 주저자(책임연구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 / 공동저자의 순서로 표기한다.

9. 참고문헌의 표기

- 논문의 본문 뒤에 중요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목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10. 작성 순서

- 논문제목
- 저자 이름
- 목차(로마자만 표시)
- 논문투고일, 논문심사일, 게재확정일
- 국문초록(200자 원고지 2매 내외)
- 국문주제어(5개 이상)
- 본문(I. 1. 1) (1) i) 순서에 의함)
- 참고문헌
- 영문초록
- 영문주제어(5개 이상)